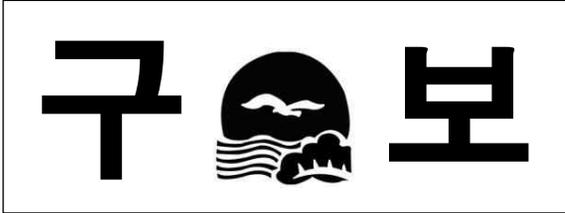


인천광역시 중구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결	기 관 의 장



제 1381 호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637호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638호 (인천광역시 중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조례) 19
-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639호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22
-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640호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 .. 26
-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641호 (인천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8
-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642호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31
-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643호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34
-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644호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7
-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645호 (인천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47
-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646호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1
-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647호 (인천광역시 중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55

규 칙

- 인천광역시중구규칙 제1037호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 58

회 람									
--------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중구

편집 : 홍보체육실

조 례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총칙(제1조, 제2조)
- 나. 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제3조~제16조)
- 다.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등(제17조~제32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정현

2023년 11월 17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637호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고충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그 소속 기관(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2장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

제3조(위원회 설치) 구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1. 구 및 그 소속 기관 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구청장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가 다수인관련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4.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합의 및 조정 등 처리
5.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5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운영취지, 목적, 직무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8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직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회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과 관련되는 사항
3. 위원이 자문·감정 등을 한 사항

②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직무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직무활동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에 대한 사항
2. 법 제51조에 따른 감사의뢰에 대한 결정
3. 종전의 의결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로 심의·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제10조(조사대상의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1. 구 본청 및 그 소속 기관, 하부 행정기관
2.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3. 구의 사무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제11조(위원회 회의 소집) 위원장은 제9조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밝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2조(의안작성·배부 등) 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개최 3일 전 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의 순서로 진행한다.

② 의안의 제안 설명은 감사실장이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실의 직원이 보충설명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조사대상 기관(“조사대상 기관”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전문가의 자문)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유지 의무) 위원회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장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등

제17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가 고충민원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지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제18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 기관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조사대상 기관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 ② 조사대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고충민원의 이송 등) ①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써 그 관장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6. 사인(私人)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7. 조사대상 기관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조사대상 기관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21조(합의의 권고) ①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합의서에 당사자(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말한다) 간 합의한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조정) ① 위원회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원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4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치법규 및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5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위원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조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기 전에 조사대상 기관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조사대상 기관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고충민원의 결정내용) ① 위원회의 결정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각하 또는 이송: 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시정권고: 제2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의견표명: 제2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4. 제도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
5. 기각: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심의안내: 신청인의 민원과 관련한 행정절차 또는 제도를 설명하거나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안내를 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결정: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의결서
2. 제1항제4호의 결정: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의결서

제27조(결정의 통지)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관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정: 민원처리결과 통지, 이 경우 제26조제2항에 따른 의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제26조제1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의 결정: 결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제28조(처리결과와 통보 등) ①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조사대상 기관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조사대상 기관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감사의 의뢰)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조사대상 기관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위원회는 구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0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위원회는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31조(공표)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2. 제28조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
3. 제28조제2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불이행사유

제32조(기록의 관리) ① 위원회의 모든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되, 고충처리 민원기록은 건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고충민원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결서, 조정서, 합의서: 준영구
2. 심의·의결 관련문서: 5년
3. 일반문서: 3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고충민원 접수증

접수번호		민원제목		
신청인	성명(또는 법인·단체 명칭)		주소	
대표자 (대리인)	성명		주소	
접수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별지 제5호서식]

합 의 서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합의일시	20 :
합의장소	

합의내용

위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20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대상기관)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서식]

조 정 서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조정일시	20 :
조정장소	

조정내용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20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대상기관)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7호서식]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의 결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청인 성명
 주소
 피신청인
 주문
 신청취지
 이유 별지와 같다.

20

위 원 장	(서명)
위 원	(서명)

(별지)

이유

1. 신청원인
2. 피신청인 등 주장
3. 사실 관계
4. 관계법령
5. 판단
6. 결론

[별지 제8호서식]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의 결

의안번호:

의 안 명:

소관기관:

결정사항:

이 유 별지와 같다.

20

위 원 장	(서명)
위 원	(서명)

(별지)

이유

1. 현황
2. 관계법령
3. 문제점
4. 개선방안

○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조례

제정사유

이 조례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제3조)
- 다. 지원대상(제4조)
- 라. 지원내용(제5조)
- 마. 지원방법, 지원신청 및 결정(제6조~제7조)
- 바. 업무의 대행(제8조)
- 사. 점검 및 비용환수(제9조~제10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현

2023년 11월 17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638호

인천광역시 중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다.
- 2. “무연고 사망자”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 3.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장례 지원대상은 구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2.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4. 「인천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독사로서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다음 각 목의 장례비용에 대한 지원
 - 가.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나.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등

다. 화장비용

2. 인력 및 장소의 지원

제6조(지원방법) ①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제5조제1호에 따른 현금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및 그 밖의 관계인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지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장례처리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지원신청 및 장례 처리 결과보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업무의 대행)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자 및 장례수행자가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장례 지원업무 대행자가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비용환수)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장례수행자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 지원 업무 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개정사유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정비하고,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한 목적 및 명칭, 용어 정비(제1조~제4조, 제6조)

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의 조·항·호·목의 사용방법에 따라 정비

(제3조, 제4조, 제6조)

다. 제설·제빙 책임 범위 일부 구체적으로 규정(제4조)

라. 제설·제빙작업의 시기 내용 수정(제5조)

마. 제설·제빙 시 안전관리 규정 마련(제6조)

바. 제설·제빙 시 장비 구비에 대한 내용 구체적 명시(제7조)

사. [별표 1] 삭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현

2023년 11월 17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639호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란 연석선·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 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 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전 구간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하 “시설물의 지붕”이라 한다)
 - 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 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제빙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
- 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
- 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 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여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 ③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제빙 도구 등의 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삽·빗자루 등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제설·제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

폐지사유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종료로 존치실익이 없는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를 폐지함.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현

2023년 11월 17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640호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사유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경우 인천사랑상품권을 지원목록에 추가하여 사용처를 다양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경우 “인천사랑상품권”을 지원 항목에 추가 (제8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현

2023년 11월 17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641호

인천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을 “교통카드 또는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사랑상품권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재정 지원 등)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u>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u>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8조(재정 지원 등) ----- ----- ----- ----- <u>교통카드 또는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사랑상품권을</u> ----- -----.</p>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사유

가. 지방재정법 제9조의 4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

나. 존속기한이 연장되지 않은 특별회계는 2024년도 예산편성 불가능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도록 조문 개정(제7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현

2023년 11월 17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642호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2023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은 <u>2023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 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u>	제7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 --- <u>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 재정법」 제9조제4항</u> ----- -----.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사유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을 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안전관리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구체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대상 조항 신설(제5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현

2023년 11월 17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643호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안전관리 시설”이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계장치)
 - 나. 안심스크린(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의 빈 공간을 막는 시설)
 - 다. 그 밖에 안전관리에 활용되는 각종 시설물 및 기계장치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이동화장실은 제외한다)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말한다.

제6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 시설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등이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안심스크린”이란 불법촬영을 막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단부와 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안전관리 시설”이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p> <p>가. 비상벨(비상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계장치)</p> <p>나. 안심스크린(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의 빈 공간을 막는 시설)</p> <p>다. 그 밖에 안전관리에 활용되는 각종 시설물 및 기계장치</p>
<p>제5조(설치기준) (생 략)</p> <p><신 설></p>	<p>제5조(설치기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이동화장실은 제외한다)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말한다.</p>
<p>제6조(위탁관리 및 공중화장실 관리인 지정 등)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② ~ ④ (생 략)</p>	<p>제6조(위탁관리 및 공중화장실 관리인 지정 등) ① 구청장----- ----- ----- -----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사유

1인 가구의 증가로 음식물류 폐기물 소량배출에 따른 소형 규격(1L)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를 반영하여 주민 편의성 향상 및 악취·부패 등 위생 문제를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주요내용

- 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1L 규격 추가 (별표 2 , 별표 5)
- 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자가감량하는 경우 발생하는 부산물의 처리방법 구체화 (제14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현

2023년 11월 17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644호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량배출사업장”이란을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제5항제1호 중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를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전용수거용기 및”을 “전용수거용기 및”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다량배출사업장에서”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로, “음식물류”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법 제15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나 퇴비화·사료화 또는 부숙(썩혀서 익히는 것)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 중 “2월”을 “2개월”로, “개선여부”를 “개선 여부”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영 제38조의3”을 “영 제38조의4”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에 서”를 “에서”로 한다.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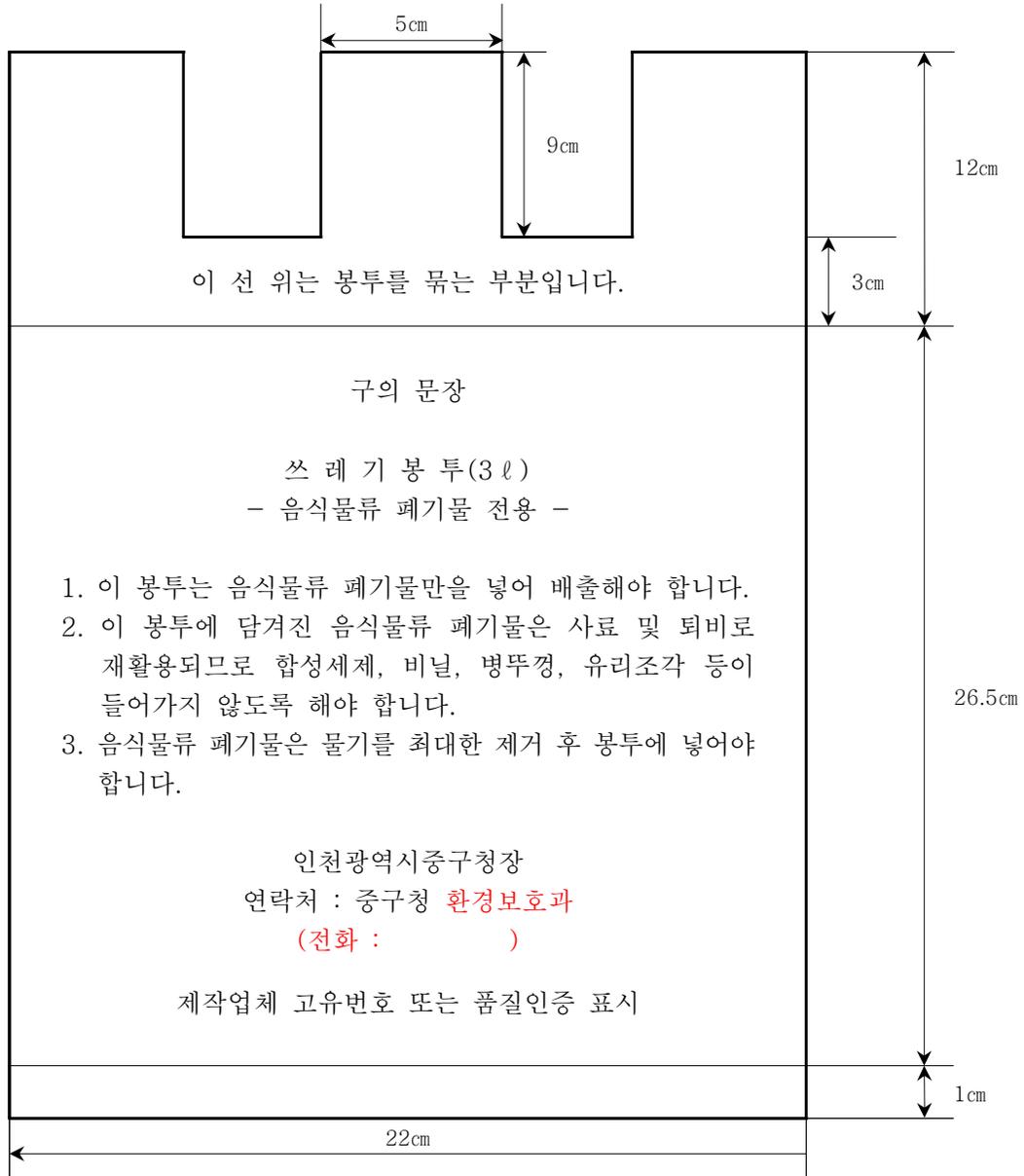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규격(제10조제2항 관련)

봉투 용량 (l)	봉투 전체 규격			봉투 세부 규격					비고 (색상)
	가로 (cm)	세로 (cm)	두께 (mm)	폐기물을 담는 부분 (cm)	묶는 부분 (cm)	묶는 끈 가로 (cm)	묶는 끈 세로 (cm)	접합가공 부분 (cm)	
1	15	29.5	0.025	18.7	9.8	4	7	1	노란색
2	19	35.5	0.025	23.4	11.1	4	8	1	노란색
3	22	39.5	0.025	26.5	12.0	5	9	1	노란색
5	26	46.5	0.025	32.3	13.2	6	10	1	노란색
10	33	56.5	0.025	40.0	15.5	7	12	1	노란색
20	45	69.5	0.030	50.1	18.4	8	15	1	노란색

[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제작 사양(제10조제2항 관련)



가. 글씨체는 명조체로 하고, 글씨색은 봉투색과 대조되는 색을 사용
나. 상기 사양은 3ℓ 봉투의 사양임

[별표 5]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및 전용수거용기 가격(제16조제4항 관련)

1. 계량 형태별 수수료

구 분	수 수 료	비 고
무게형	70원/kg	
부피형	60원/ℓ	

2. 전용봉투, 납부필증 가격

(단위:원)

구 분	1 ℓ	2 ℓ	3 ℓ	5 ℓ	10 ℓ	20 ℓ	60 ℓ	120 ℓ
판매가격	60원	120원	180원	300원	600원	1,200원	3,600원	7,200원
공급가격	55원	110원	165원	275원	550원	1,100원	3,300원	6,600원
판매이익	5원	10원	15원	25원	50원	100원	300원	600원

3. 전용수거용기 가격

판매가격	공급가격	판매이익
공급가격 + 판매이익	전용수거용기 조달단가	공급가격의 9%

※ 원 단위는 절사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3. “다량배출사업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이하 “구”라 한다)의 구역 안에서 운영 중인 사업장을 말한다.	3. “ <u>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u> ” (이하 “ <u>다량배출사업장</u> ”이라 한다)이란 ----- -----.
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 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 급식소	가. ----- -----「 <u>사회복지사업법</u> 」 제2조 제4호----- ----- -----
나. 다. (생 략)	나. 다. (현행과 같음)
라. 「 <u>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u> 」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 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라. 「 <u>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u> 」 ----- ----- -----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8조(노력의무) ① ~ ④ (생 략)	제8조(노력의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6조에 따른 사업자별 음식물류 폐기 물의 발생억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 -----.
1. 「 <u>식품위생법</u> 」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 급식소 운영자: 깔끔 포장(먹지 못하는 부분을 미리 다듬어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당일 식사인원 예측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배식 진행 상황을 파악해가며 시간차를	1. 「 <u>식품위생법</u> 」 제2조제12호----- ----- ----- ----- -----

현 행	개 정 안
<p>두고 조리하는 것을 말한다),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p> <p>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운영자: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p> <p>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개설·운영자: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p> <p>⑥ (생 략)</p> <p>제10조(전용봉투 등의 종류·재질) ① ~ ③ (생 략)</p> <p>④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의 규격과 제작 사양은 별표 4와 같다.</p> <p>제14조(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처리 방법 등) ① (생 략)</p> <p>②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해야 한다.</p> <p><신 설></p>	<p>----- -----</p> <p>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p> <p>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 -----</p> <p>⑥ (현행과 같음)</p> <p>제10조(전용봉투 등의 종류·재질)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전용수거용기 및 ----- ----- -----.</p> <p>제14조(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처리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 ----- ----- -----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 -----.</p> <p>1.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법 제15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신설></p> <p><신설></p> <p>제17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 (생략)</p> <p>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개선해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해야 한다.</p> <p>③·④ (생략)</p> <p>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제17조 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 3에 따른다.</p> <p>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p>	<p>2. 다량배출사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나 퇴비화·사료화 또는 부숙(썩혀서 익히는 것)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p> <p>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p> <p>제17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2개월 ----- 개선 여부-----.</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 영 제38조의 4-----.</p> <p>② -----에서-----.</p>

신 · 구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2]</p> <p>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규격(제10조제2항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봉투 용량 (L)</th> <th colspan="3">봉투 전체 규격</th> <th colspan="5">봉투 세부 규격</th> <th rowspan="2">비고 (색상)</th> </tr> <tr> <th>가로 (cm)</th> <th>세로 (cm)</th> <th>두께 (mm)</th> <th>폐기물을 담은 부분 (cm)</th> <th> 묶는 부분 (cm)</th> <th> 묶는 끈 가로 (cm)</th> <th> 묶는 끈 세로 (cm)</th> <th> 접합가공 부분 (cm)</th> </tr> </thead> <tbody> <tr> <td>2</td> <td>19</td> <td>35.5</td> <td>0.025</td> <td>23.4</td> <td>11.1</td> <td>4</td> <td>8</td> <td>1</td> <td>노란색</td> </tr> <tr> <td>3</td> <td>22</td> <td>39.5</td> <td>0.025</td> <td>26.5</td> <td>12.0</td> <td>5</td> <td>9</td> <td>1</td> <td>노란색</td> </tr> <tr> <td>5</td> <td>26</td> <td>46.5</td> <td>0.025</td> <td>32.3</td> <td>13.2</td> <td>6</td> <td>10</td> <td>1</td> <td>노란색</td> </tr> <tr> <td>10</td> <td>33</td> <td>56.5</td> <td>0.025</td> <td>40.0</td> <td>15.5</td> <td>7</td> <td>12</td> <td>1</td> <td>노란색</td> </tr> <tr> <td>20</td> <td>45</td> <td>69.5</td> <td>0.030</td> <td>50.1</td> <td>18.4</td> <td>8</td> <td>15</td> <td>1</td> <td>노란색</td> </tr> </tbody> </table>		봉투 용량 (L)	봉투 전체 규격			봉투 세부 규격					비고 (색상)	가로 (cm)	세로 (cm)	두께 (mm)	폐기물을 담은 부분 (cm)	묶는 부분 (cm)	묶는 끈 가로 (cm)	묶는 끈 세로 (cm)	접합가공 부분 (cm)	2	19	35.5	0.025	23.4	11.1	4	8	1	노란색	3	22	39.5	0.025	26.5	12.0	5	9	1	노란색	5	26	46.5	0.025	32.3	13.2	6	10	1	노란색	10	33	56.5	0.025	40.0	15.5	7	12	1	노란색	20	45	69.5	0.030	50.1	18.4	8	15	1	노란색	<p>[별표 2]</p> <p>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규격(제10조제2항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봉투 용량 (L)</th> <th colspan="3">봉투 전체 규격</th> <th colspan="5">봉투 세부 규격</th> <th rowspan="2">비고 (색상)</th> </tr> <tr> <th>가로 (cm)</th> <th>세로 (cm)</th> <th>두께 (mm)</th> <th>폐기물을 담은 부분 (cm)</th> <th> 묶는 부분 (cm)</th> <th> 묶는 끈 가로 (cm)</th> <th> 묶는 끈 세로 (cm)</th> <th> 접합가공 부분 (cm)</th> </tr> </thead> <tbody> <tr> <td>1</td> <td>15</td> <td>29.5</td> <td>0.025</td> <td>18.7</td> <td>9.8</td> <td>4</td> <td>7</td> <td>1</td> <td>노란색</td> </tr> <tr> <td>2</td> <td>19</td> <td>35.5</td> <td>0.025</td> <td>23.4</td> <td>11.1</td> <td>4</td> <td>8</td> <td>1</td> <td>노란색</td> </tr> <tr> <td>3</td> <td>22</td> <td>39.5</td> <td>0.025</td> <td>26.5</td> <td>12.0</td> <td>5</td> <td>9</td> <td>1</td> <td>노란색</td> </tr> <tr> <td>5</td> <td>26</td> <td>46.5</td> <td>0.025</td> <td>32.3</td> <td>13.2</td> <td>6</td> <td>10</td> <td>1</td> <td>노란색</td> </tr> <tr> <td>10</td> <td>33</td> <td>56.5</td> <td>0.025</td> <td>40.0</td> <td>15.5</td> <td>7</td> <td>12</td> <td>1</td> <td>노란색</td> </tr> <tr> <td>20</td> <td>45</td> <td>69.5</td> <td>0.030</td> <td>50.1</td> <td>18.4</td> <td>8</td> <td>15</td> <td>1</td> <td>노란색</td> </tr> </tbody> </table>		봉투 용량 (L)	봉투 전체 규격			봉투 세부 규격					비고 (색상)	가로 (cm)	세로 (cm)	두께 (mm)	폐기물을 담은 부분 (cm)	묶는 부분 (cm)	묶는 끈 가로 (cm)	묶는 끈 세로 (cm)	접합가공 부분 (cm)	1	15	29.5	0.025	18.7	9.8	4	7	1	노란색	2	19	35.5	0.025	23.4	11.1	4	8	1	노란색	3	22	39.5	0.025	26.5	12.0	5	9	1	노란색	5	26	46.5	0.025	32.3	13.2	6	10	1	노란색	10	33	56.5	0.025	40.0	15.5	7	12	1	노란색	20	45	69.5	0.030	50.1	18.4	8	15	1	노란색
봉투 용량 (L)	봉투 전체 규격			봉투 세부 규격					비고 (색상)																																																																																																																																												
	가로 (cm)	세로 (cm)	두께 (mm)	폐기물을 담은 부분 (cm)	묶는 부분 (cm)	묶는 끈 가로 (cm)	묶는 끈 세로 (cm)	접합가공 부분 (cm)																																																																																																																																													
2	19	35.5	0.025	23.4	11.1	4	8	1	노란색																																																																																																																																												
3	22	39.5	0.025	26.5	12.0	5	9	1	노란색																																																																																																																																												
5	26	46.5	0.025	32.3	13.2	6	10	1	노란색																																																																																																																																												
10	33	56.5	0.025	40.0	15.5	7	12	1	노란색																																																																																																																																												
20	45	69.5	0.030	50.1	18.4	8	15	1	노란색																																																																																																																																												
봉투 용량 (L)	봉투 전체 규격			봉투 세부 규격					비고 (색상)																																																																																																																																												
	가로 (cm)	세로 (cm)	두께 (mm)	폐기물을 담은 부분 (cm)	묶는 부분 (cm)	묶는 끈 가로 (cm)	묶는 끈 세로 (cm)	접합가공 부분 (cm)																																																																																																																																													
1	15	29.5	0.025	18.7	9.8	4	7	1	노란색																																																																																																																																												
2	19	35.5	0.025	23.4	11.1	4	8	1	노란색																																																																																																																																												
3	22	39.5	0.025	26.5	12.0	5	9	1	노란색																																																																																																																																												
5	26	46.5	0.025	32.3	13.2	6	10	1	노란색																																																																																																																																												
10	33	56.5	0.025	40.0	15.5	7	12	1	노란색																																																																																																																																												
20	45	69.5	0.030	50.1	18.4	8	15	1	노란색																																																																																																																																												
<p>[별표 3]</p> <p>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제작 사양(제10조제2항 관련)</p> <p>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p> <p>구의 분장</p> <p>쓰레기 봉투(3L)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봉투는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넣어 배출해야 합니다. 이 봉투에 담겨진 음식물류 폐기물은 사료 및 퇴비로 재활용되므로 합성계제, 비닐, 병뚜껑, 유리고각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물기를 최대한 제거 후 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p>인천광역시중구구청 연락처 : 중구청 청소과 (전화 : 760-7410)</p> <p>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p>		<p>[별표 3]</p> <p>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제작 사양(제10조제2항 관련)</p> <p>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p> <p>구의 분장</p> <p>쓰레기 봉투(3L)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봉투는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넣어 배출해야 합니다. 이 봉투에 담겨진 음식물류 폐기물은 사료 및 퇴비로 재활용되므로 합성계제, 비닐, 병뚜껑, 유리고각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물기를 최대한 제거 후 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p>인천광역시중구구청 연락처 : 중구청 환경보호과 (전화 :)</p> <p>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p>																																																																																																																																																			
<p>가. 글씨체는 명조체로 하고, 글씨색은 봉투색과 대조되는 색을 사용 나. 상기 사양은 3L 봉투의 사양임</p>		<p>가. 글씨체는 명조체로 하고, 글씨색은 봉투색과 대조되는 색을 사용 나. 상기 사양은 3L 봉투의 사양임</p>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사유

1회용품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지역사회에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등(제3조)

다.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제4조)

라. 실태조사(제5조)

마. 교육 및 홍보(제6조)

바. 1회용품 사용 제한 등(제7조)

사. 자발적 협약의 체결 및 환경우수업소 지정 등(제8조~제9조)

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촉진(제10조)

자. 다회용품의 사용 촉진 지원(제11조)

차. 포상(제12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현

2023년 11월 17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645호

인천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지역사회에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로 여러 번에 걸쳐 반복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
 - 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
 -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구민 및 업소 등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구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제4조(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다회용품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의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사업
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개인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만든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7조(1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 및 회의
2. 공공기관이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대비 등 1회용품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용품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제8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다회용품 지원 등에 대한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환경우수업소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인증마크 수여
- 2. 우수업소 홍보
-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촉진)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다회용품의 사용 촉진 지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제8조의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식품접객업 등에서 필요한 컵, 장바구니 등의 다회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또는 일부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홍보 및 우수업소 운영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사유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기획정비 계획에 의거 상위법령의 제·개정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농산물품질관리법」및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상위법령의 변경사항 반영(제2조)

나.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청”을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변경(제7조)

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장정비(제4조 및 제7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현

2023년 11월 17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646호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으로 한다.

제4조 중 “예산범위 안”을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청”을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남부교육청”을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호선한다”를 “서로 뽑는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우수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과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으로서 인천 지역에서 생산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p> <p>3.·4. (생 략)</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 -----.</p> <p>3.·4. (현행과 같음)</p>
<p>제4조(경비의 지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인천지역 우수 농·수·축산물 소요경비의 일부를 <u>예산범위</u>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4조(경비의 지원) ----- ----- ----- ----- <u>예산의 범위</u>----- -----.</p>
<p>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생 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p> <p>1. (생 략)</p> <p>2. <u>인천광역시 남부교육청</u> 관련 과장</p> <p>3.·4. (생 략)</p> <p>5. <u>남부교육청</u>에서 추천한 교원</p> <p>6. ~ 8. (생 략)</p>	<p>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현행과 같음)</p> <p>2. <u>관할 교육지원청</u> -----</p> <p>3.·4. (현행과 같음)</p> <p>5. <u>관할 교육지원청</u>-----</p> <p>6. ~ 8.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은 위원회에서 <u>호선한다</u> .	③ ----- ----- <u>서로 뽑는다</u> .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사유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남녀노소 누구나 비용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걷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제3조)
- 다. 지원계획 수립 및 걷기 활성화 사업(제4조~제5조)
- 라. 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제6조)
- 마. 기록·관리(제7조)
- 바. 협력체계의 구축(제8조)
- 사. 포상(제9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현

2023년 11월 17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647호

인천광역시 중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활성화 사업”이란 국민의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진·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참여자”란 걷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해 개설한 인천광역시 중구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 등 구청장이 추진하는 각종 걷기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4. “맨발산책로”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구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걷기 활성화 사업) ①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개발
2.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3.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4. 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5.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세족대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걷기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신체활동 용품 및 관련 생활용품
2. 문화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3. 기프트콘 등 모바일상품권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기록·관리) 구청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걸음 수, 인센티브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구민, 기관·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 칙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폐지사유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종료로 존치실익이 없는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현

2023년 11월 17일

인천광역시 중구 규칙 제1037호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